

출제유형분석

	법령	이론	계		법령	이론	계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	1	1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	2	2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4	2	6	지방자치의 재정	2	2	4
지방자치의 운영	6	-	6	정부 간 관계	1	-	1

01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예산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ㄴ. 중앙 정부의 입법에 의해 처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다.
 ㄷ. 주민의 참여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ㄹ.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ㄱ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ㄴ [×]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초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2004년에 처음 도입 한 후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였다.
 ㄷ [×] 주민의 참여 절차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ㄹ [○]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는 지방회의의 예산심의권과 충돌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53

▶ ②

02 지방자치단체의 설립목적에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종류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한다. 다음 중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서울특별시
 ②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③ 세종특별자치시
 ④ 청주시

해설 ② [×]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해당된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교통본부, 부산·진해 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등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41

▶ ②

03 다음 중 아른슈타인(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 8단계론에서 비참여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회유 - 권한위임
- ② 조작 - 자문
- ③ 정보제공 - 자문
- ④ 치료 - 조작

해설 ④ [○] 조작과 임시치료가 비참여의 수준이다. 비참여 수준은 결정과정에 주민참여가 거의 없고, 주민포섭에 머무르는 수준을 말한다.

〈주민참여의 유형(Arnstein)〉

조 작	임시치료	정보제공	상 담	회 유	대등협력	권한위양	자주관리
비참여		형식 참여			주민권력적 참여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31

▶ ④

04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 ②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용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 ③ 조직기반이 강한 지역정치인보다는 정책지향성이 높은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 ④ 여성과 소수정당 출신의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해설 ① [○] 중·대선거구는 대규모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만큼 소선거구제가 불러올 수 있는 소지역 주의 내지는 소지역 이기주의를 막을 수 있다.
 ② [×] 소선거구제를 찬성하는 논거이다. 소선거구제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보다 빈번하여 유권자가 보다 쉽게 후보자를 식별할 수 있고, 당선 후에도 이러한 접촉은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③ [○] 소선거구제는 조직을 바탕으로 한 지역정치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대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정책지향성이 높은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④ [○] 소선거구제에서는 당선되기 힘든 정치 신인, 여성과 소수정당 출신 인사 등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21

▶ ②

05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규칙으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해설 ① [X] 조례로써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O] 동법 제23조

동법 제23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O]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O] 동법 제22조

동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62 / 부속법령 p.20

▶ ①

06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다음 중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
- ② 안전과 관련된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③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법제처장

해설 ③ [X]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시·도지사 협의회×)가 위촉하는 사람이다.

지방자치법 제168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209 / 부속법령 p.74

▶ ③

07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및 채권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해설 ①, ③, ④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52, 175 / 부속법령 p.56

▶ ②

08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의결·집행기관이다.
- ③ 지방의회의 현직 의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있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해설 ① [○]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부단체장), 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지방공무원법 제9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 인사위원회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들 기관들은 인사에 관한 일정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결정 또는 집행하는 특별기관이다.
- ③ [×]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의원 등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동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 ④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동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01

▶ ①

09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991년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동시에 선출되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분리된 기관분리형이다.
- ③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제도가 채택되지 않았다.
-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이 2계층인 중층제이다.

해설 ① [X]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에 처음 치러졌다.

② [O] 우리나라는 기관분리형(기관대립형)의 형태를 택하고 있다.

③ [X]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제도가 모두 채택되었다.

④ [X]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이 1계층인 단층제이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29, 85, 132

▶ ②

10 지방자치권의 근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주어진다고 본다.
- ②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창조물로 보는 준독립설은 고유권설의 하나이다.
- ③ 전래권설에서는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순수탁설은 전래권설의 하나이다.

해설 ① [X] 전래권설에 대한 설명이다. 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지방의 고유한 권리로 보는 견해이다.

② [X]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 창조물이라고 보는 견해는 전래권설이다.

③ [X] 고유권설에 대한 설명이다.

④ [O] 국권설, 수탁설은 지방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이라는 전래권설에 해당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7

▶ ④

1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2기에 한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②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2기×)에 한한다.

동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③, ④ [○] 동법 제100조

동법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7 / 부속법령 p.47

▶ ②

12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특별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 ②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운영에 대하여는 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③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정부의 직할로 두지 않는다.
- ④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등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해설 ① [X] 특별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73조 【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② [X]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법률(조례 X)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동법 제174조 【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③ [X] 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둔다.

동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④ [○] 동법 제175조

동법 제17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48 / 부속법령 p.77~81

▶ ④

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으로는 소속공무원, 부시장, 부지사, 구청장, 동장, 면장 등이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에 의해 소환이 확정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하나, 그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위탁할 수 있다.

해설 ①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위임사무의 관리와 처리가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행정청×)에게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7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은 부단체장, 행정기구, 지방공무원 등이 있다.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등은 하부 행정기관이다.
- ③ [X] 주민소환에 의해 직을 상실한 경우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주민소환투표의 효력) 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 ④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 위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그 사무를 위임,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은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6, 141 / 부속법령 p.75

▶ ④

14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통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해설 ② [X]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X]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에는 조례로 정한다.

- ④ [X]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의 조정절차〉

구 분	형 식	대 상 및 절 차
자치구역 (광역 & 기초자치단체)	법 률	명칭변경, 구역변경, 폐치분합 (지방의회 의견청취 必要, 단,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 제외)
	대통령령	한자명칭변경, 경계변경
행정구역 (자치구가 아닌 구, 읍, 면, 동)	조 례	폐치분합(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명칭변경, 구역변경(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58, 59 / 부속법령 p.6

▶ ①

1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아닌 것은?

- ① 예산의 편성·집행, 공유재산관리
- ②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③ 물가정책·근로기준 등의 운영
- ④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해설 ① [X] 물가정책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나 근로기준과 같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동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76 / 부속법령 p.8

▶ ③

16 우리나라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 ②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④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 해설** ① [X]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 ③ [X]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자체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④ [X]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69

▶ ②

17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에서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O]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③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O] 동법 제108조 제1항

동법 제108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9 / 부속법령 p.49

▶ ③

18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과 하부 및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 면, 동을 직속기관으로 둘 수 있다.
- ②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구와 관계없이 2명의 부단체장을 둔다.
- ③ 서울특별시는 3명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을 둔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관으로 소방 및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①, ④ [X] 지방자치법상 직속기관은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을 말한다. 읍·면·동은 행정계층이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X], ③ [O]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의 부단체장을 두며, 서울특별시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110조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03 / 부속법령 p.50

▶ ③

19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지방정부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 ③ 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출 선택범위가 넓어져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진다.
- ④ 재정자립도가 같으면 그 두 자치단체 간 재정규모도 같다고 할 수 있다.

해설 ① [O]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총액 가운데 자주자원(지방세수입 +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 ③ [O] 의존재원이 적다는 것은 세입총액 가운데 자주재원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지방재정자립도는 높게 나타난다.

② [O] 특정자원보다 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확보된다.

- ④ [X] 재정자립도는 총재정규모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같다고 해서 재정규모까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78

▶ ④

20 지방의회의 소집과 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② 현행법상 휴회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③ 정례회의 회기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해설 ① [X]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③ [O] 동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O] 동법 제45조 제2항

동법 제45조 【임시회】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4 / 부속법령 p.35

▶ ①